

국 무 총 리 행 정 조 정 실



국무총리 지시 제 17 호 (70-2012) 1974. 11. 12

수신 : 수신처 참조

제목 : 하천골 재 채취 업무 개선

1. 근래 자갈, 모래등 하천골 재의 수요급증에 편승하여 무질서한 하천골 재 채취행위가 자행되는 한편 각 하천 관리청의 부 계획한 채취허가 처분 및 감독소홀 등으로 인해 중요 공공시설물과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2. 따라서, 하천법 제 25조에 의한 자갈, 모래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업무처리에 있어 하천골 재의 원활한 수급과 고량, 탬등 공공시설물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다 음

가. 건설부와 각시, 도등 하천관리청은 "하천골 재 채취허가 사무처리 지침 (74. 8. 7)"의 내용을 하천관리 공무원에게 숙지시키고, 동 지침에 따라서 채취허가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.

국무총리 지시 제 17 호

1974. 11. 12

나. 각 하천관리청은 허가조건 준수 여부, 위법채취 및  
반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 공공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 
보호구역은 엄격히 유지도록 할 것.

다. 건설부는 내무부와 협의, 하천골재의 채취로  
인하여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하천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 
당해 하천관리청의 장에 대하여 문책할 것.

끝.

국 무 총 리

수신처 : 가(21, 28) 나(1-11)